



## 공고 및 고시

### ◎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-122호

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(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-54호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1997. 6. 30

통상산업부장관

##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

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“공인시험기관”이라 함은 한국전기연구소, 한국전기연구소와 중전기기시험에 관해 상호인증 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(시험의 신청) 중전기기를 생산, 수입 판매하는 자(이하 “생산자”라 한다)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인증시험(이하 “공인인증시험”이라

한다)과 개발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5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규격은 다음 각호 1의 규격으로 한다.

1.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및 단체표준
2.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
3.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(IEEE) 규격
4. 기타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

## 부 칙

시행일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◎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-101호

'98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실행계획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7. 7. 19.

통상산업부장관

## '98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 계획

### 1. 목 적

-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5조(연차 실행계획)에 따라 '98년도에 연구해야 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기 위함.
- 대체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및 편의성 제고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의 선진화 추구
- 이용기술의 수요개발을 통한 보급확대로 국내 에너지 수요증 대체에너지 비중 제고
- 대체에너지로써의 환경보전과 미래에너지원 확보에 기여

### 2. 정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목표

#### 〈기본계획〉

	제 1 단계	제 2 단계	제 3 단계	제 4 단계
계획기간	'88~'91	'92~'96	'97~2001	2002~2006
개발목표	연구기반구축	실용화기반구축	중점기술개발	기술의 상용화
보급목표	금융지원	수요개발, 시범보급	시장창출	보급확대

### 3. 추진체계 : (생략)

- 기술분야별 상호 보완관계에 있거나 연계가 가능한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중·대형화한 과제 우대, 이 경우 기초연구분야는 대학에서 연구 토록 할 수 있음

### 4. '98 연구수행과제 선정지침

-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심하고 기술개발에 장 기간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통한 중간진입 연구시 지원

- 기업이 사업주관기관이 되어 대학 및 국·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

## 5. 사업비 지원

-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, 과학기술처 선도기술개발사업비, 한국전력공사 연구개발비 등에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로 확보된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

## 6. '98년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공모과제：“별표” 참조

- 현재 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인 과제로서 '98년도에도 계속 수행키로 승인된 과제는 금번 공모에서 제외
- “별표” 과제외에 특별히 우수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대체에너지기술은 지원 가능

## 7. 연구비 지원 비율

- 기업-연구기관(국·공립 연구기관, 정부출연 기관, 대학,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) 공동수행 과제 : 소요사업비의 75% 이내
- 기업, 기업-기업간 공동수행과제 : 소요사업비의 60% 이내
-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: 소요사업비의 100% 이내
-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: 소요사업비의 60% 이내

## 8. 신청자격 및 절차

- 신청자격 :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
- 신청기간 : '97. 7~ 8. 31

○ 신청방법 및 사업관리 : 계획서의 작성방법, 신청서식 및 사업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기술개발운용규정 [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-64호('97. 4. 25)] 및 선도기술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[국무총리훈령 제337호('96. 10. 18) : 선도기술개발사업에 한함]에 따름.

- 접수 및 문의 :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연구관리 1부
  - 주소 : 우)137-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-34 외환신용카드 빌딩 3층
  - 전화 : (02)5809-341~345
  - 팩스 : (02)522-8093/4
  - 인터넷 홈페이지 : <http://www.racer.or.kr>

## [별표]

## '98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추진과제

### I. 일반추진과제

#### 1. 태양열

추 진 과 제	
가. 건물 태양열 복합이용 기술	
○ 통합설계 실용화 기술개발	
나. 산업용 태양열 시스템 개발	
○ 중·고온 고효율 집열기 개발 및 실용화	
○ 중·고온 축열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	
○ 태양열 발전 기반기술 개발	

## 2. 바이오에너지

추 진 과 제	
가.	연료용 알콜 생산 기술
○	고효율 균주개발
나.	메탄가스 전환기술 개발
○	산업용 폐수 메탄가스 전환공정 개발
○	1,000만m <sup>3</sup> /년 이상규모 LFG 실증실험
다.	미래 바이오에너지 기술기반 연구
○	바이오디젤, 바이오매스 가스화등

## 3. 폐기물 에너지

추 진 과 제	
가.	열분해 이용기술 실용화
○	폐플라스틱, 폐타이어 등 고분자 폐기물 이용 열분해 이용시설 실용화 - 가스화 및 오일화
나.	재생 연료 제조기술 개발
○	폐유품유 정제기술 개발

## 4. 석탄이용

추 진 과 제	
가.	석탄이용 가스화 기술개발
○	석탄가스화 반응장치 및 관련기술 개발 (선도기술개발(G-7)분야 제외)
나.	석탄액화 기술 실용화 개발
○	석탄 직접액화 장치 운전 - 연속식 시험설비 운전

## 5. 수소에너지

추 진 과 제	
가.	연료용 수소 제조기술 개발
○	저가, 고효율 수소제조 공정기술
나.	수소저장 · 이용기술 개발
○	고효율 수소저장 기술
○	수소자동차, 냉 · 난방기 등 대체에너지 원으로의 이용 기초 기술

## 6. 풍력

추 진 과 제	
가.	풍력발전 요소기술 개발
○	발전기, 기어박스 등 핵심요소기술

## II. 선도기술개발(G-7)과제

### 1. 태양광

추 진 과 제	
가.	고효율 태양전지 실용화 개발
○	저가 · 고효율 Si 태양전지 실용화
나.	태양광 발전시스템 이용기술 향상
○	발전시스템 주변장치의 신뢰성 향상연구
○	응용제품 기술개발

### 2. 연료전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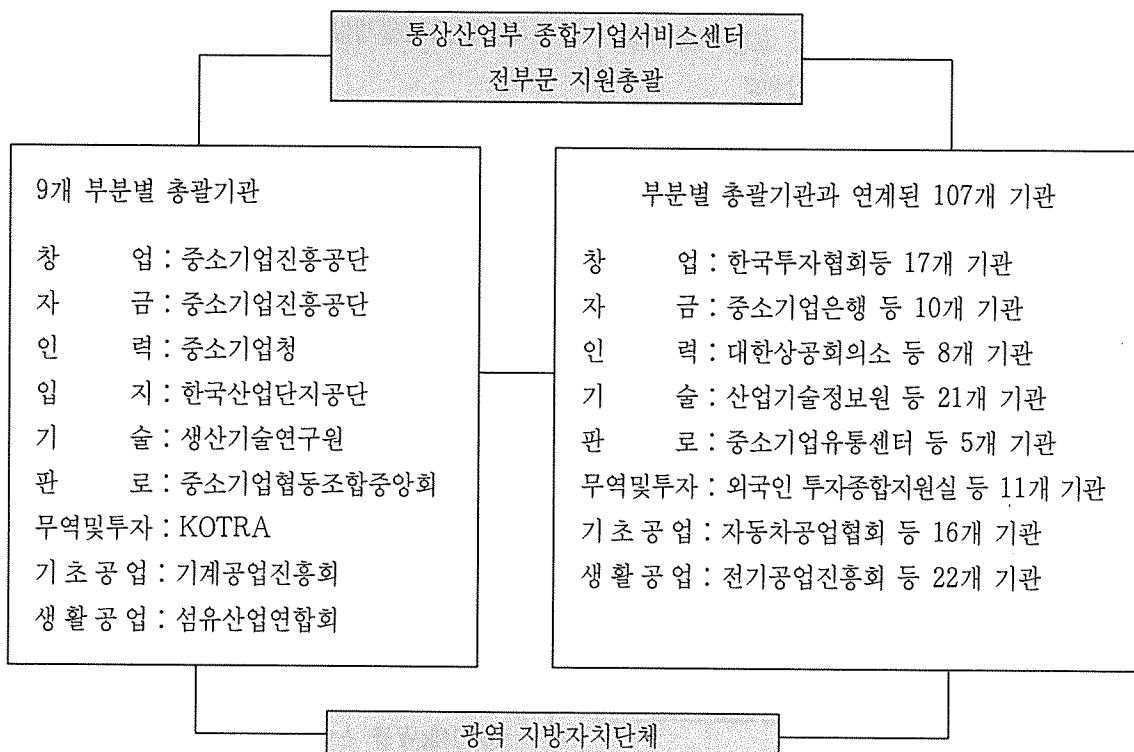
추 진 과 제	
가.	인산형 연료전지 실용화
○	MW급 시스템 운영기술 개발
나.	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
○	10kW급 스택, 시스템 및 요소기술개발

## ·통상산업부, 『종합기업서비스센터』 출범과 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 개통

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『종합기업서비스센터』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금년 8월 1일부터는 인터넷(INTERNET)을 통한 기업 서비스시스템인 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을 개통한다.

종합기업서비스센터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?

『종합기업서비스센터』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이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설치한 기업애로전담기구이다.



『종합기업서비스센터』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창업, 자금, 인력, 기술, 입지, 판로, 무역 및 투자, 기초공업, 생활공업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.

『종합기업서비스센터』는 통상산업부를 비롯하여 100여개 이상의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, 각 9개 분야별로 총괄기관 1개씩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타 기업지원기관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.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도 연결하여 지방중소기업에도 직접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

유하고 있는 입지, 자금 등의 정보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종합기업서비스센터는 기업이 언제,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. 이 센터는 기업이 전화, 팩스 등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,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상산업부와 부문별 9개 총괄기관의 전화에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퇴근 후에도 기업이 애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기관은 다음날 출근 후 즉시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다.

부문별 전담총괄기관의 연락 전화,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기 관	연 락 처	
		전 화	팩 스
종 합 안 내	통상산업부 산업진흥반	503-2500 500-2770/2	503-2506
창 업	중소기업진흥공단	769-6652	769-6708
자 금	중소기업진흥공단	769-6631	769-6657
인 力	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	503-7929	503-2512
입 지	한국산업단지공단	829-7373	829-7367
기 술	생산기술연구원	8601-663	8601-683
판 로	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	786-4311	786-4310
무 역 및 투 자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551-4384	551-4463
기 초 공 업 정 보	한국기계공업진흥회	369-7810	369-7898
생 활 공 업 정 보	한국섬유산업연합회	528-4068	528-4055

\* 상기전화는 자동응답전화기로서 퇴근후에도 기업체가 메시지를 남겨놓을 경우 다음날 출근후 처리하게 되어 있음.

####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의 이용

통상산업부는 이미 운영중인 종합기업서비스센터와 병행하여 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를 금년 8월 1일부터 개통한다.

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은 Innovation Network을 말하며 기업의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전산망을 의미한다.

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은 통상

산업부 ↔ 기능별 총괄기관 ↔ 관계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누구든지 인터넷(INTERNET)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인터넷(INTERNET)을 통해 전달이 되도록 운영된다.

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은 8월 1일부터 인터넷 주소 : <http://www.innonet.nm.kr>로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전산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■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제공

-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자금, 시책 및 관련법령과 같은 제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

#### ■ 기업의 애로를 인터넷 상으로 상담하여 처리

- 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내에 민원대화방을 개설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정보망을 통해 제기하면 관련기관이 해결
- 기업 등 이용자들이 정부에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

#### ■ 기업지원기관을 홈페이지로 연계

- 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에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의 각종 기업지원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

#### ■ 기타 주요 제공기능

- 각 지원기관에서 생성되는 최신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정보제공 기능
- 게시판, 대화방을 설치하여 이용자들간, 또는 이용자와 기업지원기관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

이미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는 전화를 통해 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의 주소인 <http://www.innonet.nm.kr>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,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용자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전용망인 전화번호 3295-0760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.

통상산업부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나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사항의 해소를 위해 『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(Inno-NET)』 운영과 더불어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한 상담도 계속 한다.

